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382
-----------	------

2021년 6월 1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영 별표 1 중 일부항목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영 별표 1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의 별표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영 별표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안 별표)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 (개정)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 그 밖에 영 별표 1에 맞추어 조례 별표의 내용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8. ~ 2021. 4. 07.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나. 검토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에서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계획, 교통수요 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중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행위임
- 법 제15조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²⁾ 등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³⁾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⁴⁾에서 도시의 개발, 도로의 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하 생략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이하 생략 -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및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범위는 법 시행령 [별표1]5)에서 ‘개발사업, 단일용도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되,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100분의 50이상 범위”6)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 및 건축물 범위 체계는 유지하되 서울시 현실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음

-
- 3)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인정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4)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권역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 7)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 이하 생략-

-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9월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진행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개별 아파트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도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⁸⁾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첨 참조]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강화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공공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단지 내 교통불편 및 사고 위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007호, 2020. 9. 8. 일부개정]

공동주택 내의 교통안전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별 첨]

※ 동 개정안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범위

- 아래 표의 대상사업은 종전에는 공공개발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 내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
가. 도시의 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 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 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2) 제1종근린생활 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7,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 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 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예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sum_{i=1}^n \frac{Pia}{Mia} \times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p> <p>1. 개발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th> <th style="width: 50%;">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 도시의 개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1) ~ 8) (생략)</td> <td rowspan="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나. ~ 카. (생략)</td> </tr> </tbody> </table> <p>2.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단일용도의 건축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주용도</th> <th style="width: 45%;">세부용도</th> <th style="width: 40%;">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 ~ 6) (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운수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8) ~ 14) (생략)</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5) 창고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6) ~ 19) (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장례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left: 20px;">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비고 1. ~ 4. (생략)</p>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8)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 카. (생략)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 6) (생략)			7)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생략)	8) ~ 14) (생략)			15) 창고 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 집배송시설	(생략)	(생략)		(생략)	16) ~ 19) (생략)			20) 장례 시설	(생략)	(생략)	<p>[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p> <p>1. 개발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th> <th style="width: 50%;">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 도시의 개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1) ~ 8) (현행과 같음)</td> <td rowspan="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나. ~ 카.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2.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단일용도의 건축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주용도</th> <th style="width: 45%;">세부용도</th> <th style="width: 40%;">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 ~ 6) (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운수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8) ~ 14) (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5) 창고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6) ~ 19) (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장례 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 style="padding-left: 20px;">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비고 1. ~ 4. (현행과 같음)</p>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8) (현행과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 카. (현행과 같음)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 6) (현행과 같음)			7)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15) 창고 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 집배송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 19) (생략)			20) 장례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8)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 카. (생략)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 6) (생략)																																																																					
7)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생략)																																																																			
8) ~ 14) (생략)																																																																					
15) 창고 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 집배송시설	(생략)																																																																			
	(생략)		(생략)																																																																		
16) ~ 19) (생략)																																																																					
20) 장례 시설	(생략)	(생략)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8) (현행과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 카. (현행과 같음)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 6) (현행과 같음)																																																																					
7)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15) 창고 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 집배송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 19) (생략)																																																																					
20) 장례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 다. (생략) 라. <u>위 표 제1호가목2)·4)·5)·9),</u> <u>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u> <u>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u> <u>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u> <u>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u> <u>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u> <u>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u> <u>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u> <u>실시하지 않는다.</u></p> <p>마. <u>위 표 제1호가목2)·4)·5)·9),</u> <u>같은 호 나목을 제외한</u> <u>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u> 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 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 률, 주차규모, 진입·출입 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 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지 않는다.</p> <p>바. ~ 자. (생략)</p>	<p>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삭제</u></p> <p>마. <u>위 표 제1호의 사업</u>----- -----</p> <p>바. ~ 자.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2-2133-2231)